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19

제출연월일 : 2021. 7.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미소친절 운동」과 「대구 FOR YOU 운동」을 통합하여 보다 더 큰 문화시민운동인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으로 변경·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통해 선진문화시민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조례

나. 사업 및 단체 명칭 변경

- 대구 FOR YOU 운동 →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
-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다. 목적조항에 조례의 목적을 통합 업무로 확장하여 보완(안 제1조)

라. 정의조항에 용어의 뜻을 통합 업무로 확장하여 재정의(안 제2조)

마. 시민추진단 구성 보완(안 제4조)

- 홍보단 구성 내용 추가

바. 시민추진단 연임제한 삭제(안 제6조)

사. 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직무 보완(안 제8조~제9조)

- 임원(홍보단장 및 총무) 추가, 임원 선출방법 보완

- 팀장 운영 항목 추가
- 홍보단장 직무 항목 추가

아. 불필요 조항 삭제 (안 제12조)

- 임원 회의 조항 삭제

자. 조문변경 및 보완(안 제13조~제14조)

- 종전 제13조 내용을 제4조에 일부이동(안 제13조)
- 홍보 및 교육방법 구체화(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5. 20. ~ 6.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시민의 미소를 살려 대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을 추진하는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이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미소친절 선진문화형성 운동을 말한다.
2.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란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캠페인 전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민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한다.

② 시민추진단은 300명 정도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민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별 시민추진단 지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홍보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시민추진단의 활동 등) ① 시민추진단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실천 및 활성화
2. 각종 행사 등에서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손님맞이 운동 전개
3.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 민간 기관·단체 및 업체·업소 등에 대한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참여 권장
4.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과 관련한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

② 시민추진단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임원 등) 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선출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국장 1명
4. 구·군 지회장 및 총무 각 1명
5. 홍보단장 및 총무 각 1명

② 회장 및 부회장은 구·군 지회장, 홍보단장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구·군 지회장 및 홍보단장은 구·군 및 홍보단 소속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각 구·군 및 홍보단 총무는 해당 지회장 및 홍보단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구·군 지회 및 홍보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시민추진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도와 시민추진단을 운영한다.

④ 구·군 지회장은 구·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구·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구·군 지회장을 보좌한다.

⑤ 홍보단장은 홍보단을 대표하고 홍보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홍보단장을 보좌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활동지원)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추진단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청결, 친절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일반시민, 학생, 기관·단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2. 안전, 청결, 친절 등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홍보물 등 제작·배포
3.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추진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추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를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추진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른 단원으로, 미소친절 모니터단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원과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임원 중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 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업무 통합사항에 따른 용어의 정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존 예산의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은아